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백영화 연구위원

연구

제20대 국회(2016. 5. 30. 임기 개시)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건이며, 그 중에서 11건이 처리되고 현재 47건이 국회에 계류 중임. 최근에는 보험업 경영 제한,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보험업 경영 제한 관련 신상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2019. 7. 26. 발의, 의안번호 2021684)

-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추가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경영이 가능함
 -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질병사망 담보에 대하여,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③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개정안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질병사망 담보의 기준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① 보험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

1)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험업 경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추가되는 보험	제10조(보험업 경영의 제한)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추가되어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 이에 의하면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질병사망 담보의 요건 중에서 보험만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함

■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고용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2019. 7. 29. 발의, 의안번호 2021708)

- 2018. 12. 11.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²⁾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이며,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위와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야 함(보험업법 제 110조의3)
 - 당시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에도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음
-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³⁾

■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관련 유동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2019. 8. 23. 발의, 의안번호 2022087)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특정 자산에 편중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06조)
- 본건 개정안은 이 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가 보험회

현행	개정안
	요건을 갖춘 보험 가. 보험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 나. 보험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

- 2)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 3) 한편 현행 은행법도 은행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고용진 의원은 은행법에 대해서도 은행의 임직원이 아니라 은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사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를 완화하려는 것임(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⁴⁾

-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있으며, 외화자산 자산운용 비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RBC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임

■ 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 관련 전자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2019. 8. 28. 발의, 의안번호 2022140)

- 의료사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함에 있어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음
- 이처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①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② 소속기관 및 ③ 의료자문의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임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자문결과를 알리도록 함으로써⁵⁾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자는 것을 개정안의 취지로 밝히고 있음 **kiri**

4) 참고로, 2017. 5. 23.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6986)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화자산 소유 한도, 부동산 소유 한도,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한 보험회사 자산운용 한도 규제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개인·법인 신용공여 : 총자산 3% ■ 동일 개인·법인 주식·채권 : 총자산 7% ■ 동일 차주 신용공여+채권·주식 소유 : 총자산 12% ■ 동일 개인·법인 등 거액 신용공여 : 총자산 20% ■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 min(총자산 2%, 자기자본 40%) ■ 대주주·자회사 주식·채권 : min(총자산 3%, 자기자본 60%) ■ 자회사 신용공여 : 자기자본 10% ■ 부동산 : 총자산 15% ■ 외국환 : 총자산 30% ■ 파생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 폐지 ■ 폐지 ■ 폐지

5) 참고로, 현행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또한 보험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자문과 및 자문건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